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401호 2018. 11. 5(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4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4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5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 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65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73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운영 및 협력사업비 공개 ---- 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8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4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1.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장고개로 200 외 1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11.05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8-11-05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2-1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200 (가좌동)	20090706	장고개를 통과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48-1, 648-3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18 (검암동)	20090922	싱아풀이 많아 싱아고개로 불렀던 승학고개의 이름을 따 명명	
3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23, 322-4	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 17-24 (오류동)	20090922	반월이라는 옛 마을이름에서 유래	
4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77-2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90번길 10 (석남동)	20090922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82-6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77번길 55 (가좌동)	20090922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4-10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249번길 36-6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766-6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55번길 11 (불로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771-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55번길 22 (불로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450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30-15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453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30-7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454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30-9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107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77번길 16 (원창동)	20090922	북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36-16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82번길 18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36-15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82번길 16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86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93번길 20 (원창동)	20171025	북항로 시작지점부터 약 1,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4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5-1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1.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검단신도시 AB15-1블록 우미린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우미건설(주) (대표 이석준)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5-1블록
 - 나. 대지면적 : 65,087㎡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98,931.2606㎡ (지하2층, 지상23~29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3개동 1,268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512,342,530천원
4. 사업기간 : 2018. 12. 01. ~ 2021. 12. 31.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5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1.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6블록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2. 사업주체 : (주)대우건설(대표자:김 형)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원당동 AB16블록
 - 나. 대지면적 : 85,540㎡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284,533.88㎡(지하 2층, 지상 29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 16개동(아파트 1,5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565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18. 11. 5. ~ 2018. 11. 19.(15일간)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60조3930외 21건(붙임 참조)		
	차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교통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7, FAX 032-560-2793)		

3. 유의사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관리팀 (☎ 032-560-48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비고
1	60조3930	김분*	2018.10.29	등록
2	04수4124	고정*(오토프라*)상품용	2018.10.29	등록
3	81루7670	(주)엔제이푸*	2018.10.25	등록
4	43더3315	박민*(파크모터*)상품용	2018.10.25	해제
5	78서6088	주식회사 엔제이푸*	2018.10.25	등록
6	54부7162	(주)타워모터*2(상품용)	2018.10.25	등록
7	95도7104	주식회사 경인글로벌특*	2018.10.23	등록
8	30루9289	전용*	2018.10.22	등록
9	86무7075	이영*	2018.10.19	등록
10	61루0304	황정*(용모터*)상품용	2018.10.17	등록
11	35노8554	정성*	2018.10.16	등록
12	85모3121	박경*	2018.10.15	등록
13	58수1756	허*	2018.10.12	등록
14	11마3894	허*	2018.10.12	등록
15	63노4713	이정*	2018.10.10	등록
16	62서0904	임성*	2018.10.10	등록
17	55무5246	양서*	2018.10.01	등록
18	45구8386	노윤*	2018.10.01	등록
19	28보4209	강미*	2018.09.21	등록
20	57부0843	이광*	2018.09.20	해제
21	11보4395	가은*	2018.09.20	등록
22	20무6285	최혜*	2018.09.20	해제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573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운영 및 협력사업비 공개

1. 지정은행 : (주)하나은행
2. 계약기간 : 2019. 1. 1. ~ 2022.12.31.(4년)
3. 계약방식 : 공개입찰경쟁
4. 취급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
5. 구금고의 주요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보관
 - 각종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 현금 등 각종 잡종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일상경비의 출납 및 보관
 - 지방채의 보관·출납 및 상환
 - 세입·세출 일계표(내용포함) 보고
 - 기타 "구청장"이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6. 구금고 협력사업비
 - 60억 원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58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 11.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인감증명 제출 요구 사무 감축을 위한 규정 및 정비
-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 인감증명 제출 요구 사무 감축을 위한 규정 및 관행 등 정비 협조 요청에 따라 대리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 삭제(제7조)
-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 및 업무 이관에 따라 종전의 건축과에서 주택관리과로 변경(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주택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738, 팩스 560-2736)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대리인이 공동주택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조직개편(부서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가.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 감축을 위한 규정 및 관행 등 정비협조 요청
[총무과-18108(2018.6.22.)호]

나.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2018.5.8.)

2. 주요내용

가. 인감증명 제출 요구 사무 감축을 위한 규정 및 관행 등 정비협조 요청
에 따라 대리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 삭제(제7조)

나.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 및 업무 이관에 따라 종전의 건축과 명
치를 주택관리과로 변경하도록 함(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87
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중 “건축과장, 서무는 공동주택관리센터담당”을 “주택관리과장, 서무는 주택관리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을 “대리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u></p> <p>제6조(조정위원회의 간사 등) ① (생략)</p> <p>② 간사는 <u>건축과장</u>, 서무는 <u>공동주택관리센터담당</u>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무는 간사를 보좌한다.</p> <p>제7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u>인감증명서</u>와 <u>대리인</u>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각 1부</p> <p>3. ~ 5. (생략)</p> <p>②·③ (생략)</p>	<p><u>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u></p> <p>제6조(조정위원회의 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주택관리과장</u>, 서무는 <u>주택관리담당</u>----- ----- ----- -----.</p> <p>제7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대리인</u>----- -----</p> <p>3. ~ 5.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별첨]

관련 법령 발췌

□ 공동주택 관리법

○ 제80조제3항(지방분쟁조정위원회)

-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군·구로서 국토교통부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해당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선정대표자, 대리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중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

< 소관 부서명 >

주택관리과 주택관리팀	
연 락 처	(032) 560 - 4738